

대도시내 법인 등록세 중과세에 대한 주요 쟁송사례 해설

김 한 기

행정자치부 세제담당관실 세제2담당

I. 序 說

지방세 중과제이란 과세대상 물건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적인 과세물건에 적용하는 세율보다 무겁게(약 2배 내지 5배)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 중과제도의 대종을 이루는 것은 대도시내 법인설립 등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중과제도와 별장,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중과하는 제도인데, 여기서는 대도시내 법인에 대한 중과세 제도 전반에 관한 개요를 살펴본 후 그중 등록세 중과제도에 관하여 최근의 주요 쟁송사례 위주로 설명하고자 한다.

대도시내 법인설립 등에 대하여 중과를 하는 취지는 대도시내의 인구와 경제력의 집중을 억제함으로써 대도시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함과 동시에 지역간의 균형발

전 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복지 국가적 정책차원에서 1971년도에 도입되어 도시집중 억제기능을 일부 담당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으나 조세평등주의 등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등 과세권자와 납세자간에 다툼이 많은 분야이므로 이들 다툼의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관련규정의 취지 및 주요 쟁송사례를 종합 분석하여 요약 정리하였다.

II.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제도의 개요 및 대도시의 범위

1. 대도시내 법인중과세 제도의 개요 및 변천과정

대도시내 법인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 제

도는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대도시내 법인등기 등에 대한 등록세를 증과세하는 제도인데, 이는 등록세가 국세로 있던 1971년 12월 28일 도입되어 1976년 등록세가 지방세로 이양시 그대로 지방세법에 규정된 것이며, 증과세율은 당초 <표 1>의 법인등기에 대한 일반세율 및 <표 2>의 부동산 등기에 대한 일반세율의 5배로 하였으나 1998년 말에 IMF체제 등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기업투자여건 지원 등을 위하여 일반세율의 3배로 완화되었다.

두번째,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증과세하는 제도인데, 이는 1973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1998년 말에 등록세와 취득세의 증과세율이 일반세율의 5배에서 3배로 인하되고, 증과세 대상 공장규모도 건축물 연면적 200㎡이상에서 500㎡이

상 공장만 증과세하도록 하여 증과대상의 공장범위도 좁혔다.

세번째, 대도시내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증과세하는 제도인데, 이는 1992년 1월 1일부터 증과세율은 당초 일반세율(2%)의 5배(10%)였으나, 1998년말에 증과세율을 3배(6%)로 완화하고,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으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만 증과세하고, 건축물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증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등 1998년말에 대도시내 법인에 대한 지방세 증과세제도는 대폭 축소·완화되었다.

2. 지방세가 증과세되는 대도시의 범위

지방세법상 증과세가 되는 대도시의 범

<표 1>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세 세율(일반세율)

등기원인별		과세표준	세율
1. 영리법인의 설립·합병	①설립과 불입	주식금액·출자금액	1000분의 4
	②자본·출자증가	불입금액·출자금액	1000분의 4
2. 비영리법인의 설립·합병	①설립과 불입	출자총액·재산가액	1000분의 2
	②출자·재산총액증가	출자·재산증가액	1000분의 2
3.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의 경우 제외)		증가한 금액	1000분의 1
4. 본점·주사무소 이전		매 1건당	75,000원
5. 지점·분사무소 설치		매 1건당	23,000원
6. “1내지 5”이외의 등기		매 1건당	23,000원

※ 위 세율중 “1~3”의 산출세액이 7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75,000원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37②)

<표 2>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 세율(일반세율)

등기원인	과세표준	세율
소유권 보존등기	사실상 취득가격	1,000분의 8
┌무상승계 취득(상속이외의 무상 취득)	시가표준액	1,000분의 15
└무상승계 취득(비영리사업자)	시가표준액	1,000분의 8
┌유상승계 취득(농지)	사실상 취득가격	1,000분의 10
└유상승계 취득(농지외 기타)	사실상 취득가격	1,000분의 30
기타 등기(말소등기, 건물구조변경 등)	매 1건당	3,000원

위는 <표 3>에서와 같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수도권으로서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그러나 <표 4>에서와 같이 과밀억제권역내에서도 공장신설 등의 억제정책을 정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산업단지 등에서는 등록세 및 재산세를 중과세하지 아니한다. 즉, <표 4>에서와 같이 ①법인의 본점·주사무소에 대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지역은 과밀억제권역 전 지역이 해당되나(법 제112조제3항) ②법인등기 등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는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하고(법 제138조제1항), ③공장 신·증설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 과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 을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법 제112조제3항, 제138조제1항 및 제188조제2항).

<표 3>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 금곡동, 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 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 12일 송도앞 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 남동유치 지역을 제외한다}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표 4> 세목별 지방세가 중과세되는 대도시의 범위 및 중과세율

세 목 별		중과세 되는 대도시	중 과 세 율
취득세	본점·주사무소	과밀억제권역 전지역	일반세율(2%)의 3배(6%)
	공장 신·증설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 제외	일반세율의 3배
등록세	법인설립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제외	일반세율의 3배
	공장 신·증설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 제외	일반세율의 3배
재산세(공장 신·증설)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 제외	5년간 일반(0.3%) 세율의 5배(1.5%)

1995년 8월 20일 이전에는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제도 지방세법상 중과세되는 대도시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5년 8월 21일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시 대도시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지방세가 중과세되는 대도시의 범위를 수도권에 한정토록 하였다.

Ⅲ. 대도시내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1. 법인의 설립과 지점·사무소 설치에 따른 등기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3배 중과하는데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지방세법 제138조①1).

(1) 법인의 범위

등록세가 중과세되는 법인은 민법상 법인, 상법상 법인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모두가 해당되며, 또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불문한 모든 법인이 해당된다.

(2) 법인의 설립

법인의 설립은 등기가 성립요건(민법 제33조, 상법 제172조)이므로 법인의 설립시점은 법인설립 등기일이 된다.

(3) 지점·분사무소 설치

지점·분사무소(사무소 또는 사업장)라 함은 다음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 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 ②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③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 그러나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및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은 지점·분사무소로 보지 아니한다(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

여기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설비를 갖추었으며, 실제도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1999.5.11. 선고, 99두 3188판결, 행자심 2000.3.29. 제200-215호).

그러므로 단순히 본점 이외의 장소에서 경리·인사·연구·연수·재산관리 업무 등 영업활동, 대외적인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부적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전산실이 본사의 1개 부서로서 직원이 상주하여 전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회계기능을 갖지 아니하고 대외적인 거래업무도 취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본사와는 별도로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아니하였다면 지방세법상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6.11. 선고 92누 10029판결).

그리고 인적설비란 당해 법인의 지휘·

감독하에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할 뿐이고 그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4.24. 선고, 98두 2737판결).

즉, 甲법인이 주유소를 설치하여 乙법인에게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 종업원 채용관리를 乙법인이 하고 있을 지라도 주유소 운영이 사실상 甲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운영되고 그 영업이익이 甲법인에 귀속된다면, 이권 주유소는 형식적으로는 乙법인 소속 종업원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甲법인이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는 당해법인의 지점에 해당된다고 본다.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

대도시(과밀억제권역)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의 경우에는 전입을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등록세를 3배 초과한다. 또한 전입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38조①2호).

(1) 대도시내 소재법인이 대도시내에서 이전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도시내로의 전입에는 대도시(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하는

법인이라 할지라도 서울특별시의외의 지역에서 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에 해당되어 증가세 대상에 해당된다(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②).

예를 들면, 대도시에 포함되는 수원시 소재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법인의 설립으로 간주되므로 법인 이전시의 등기세율(75,000원)이 아니라 법인의 설립시 세율(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의 4/1000)의 3배 증가세율(12/1000)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경우에 한하므로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내에서 서울특별시내로 전입등기한 경우는 증가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대도시(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하는 법인이 본점·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가 아닌 대도시(경기도, 인천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인설립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법인이전등기 세율(75,000원)이 적용된다.

그러나 대도시(과밀억제권역)내에 있으면서도 등록세가 증가세되는 대도시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산업단지내에 소재하는 법인이 산업단지외의 대도시로 본점을 이전하거나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는 증가세대상이 된다.

(2) 전입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 증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내로 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

여 등기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자본금란의 자본금 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3배 증가세한다.

즉, 영리법인이 자본 출자액을 증가 등기시에는 일반세율(1000분의 4)의 3배인 1,000분의 12의 세율이 적용되고, 비영리법인이 자본, 출자액 증가 등기시에는 일반세율(1,000분의 2)의 3배인 1,000분의 6의 세율이 적용된다.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의 총액 또는 자산의 총액의 증가(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증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반세율(1,000분의 1)의 3배인 1,000분의 3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관계법령이 개정으로 인하여 면허 또는 등록의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본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증가액에 한하여 이를 증가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⑤).

IV. 법인의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 증가세

대도시내 법인증과세 중에서도 쟁송이 가장 많은 분야가 법인의 부동산 등기에 대한 증가세이므로 이부분은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대도시내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3배 중과세한다(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1. 법인 설립 및 지점 등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

법인의 설립 및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한다(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2항).

여기서 일체의 부동산 등기는 법인 설립·전입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등기한 모든 부동산이 해당된다.

(1) 사업장 설치일을 기준으로 5년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인설립·설치·이전의 부동산 등기에 대한 중과대상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해석상으로 그 소급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것은 지방세 부과에 대한 체적기간이 5년이기 때문이다.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한 경우 등에는 부과체적기간이 10년이므로 지방세법상 10년까지는 소급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이와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소급과세기간을 5년이라고 한다.

그리고 법인 설립·설치·전입일로부터 5년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지라도 그 부동산 등기시점이 법인 설립·설치·전입일로부터 5년이내인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2) 대도시내 법인 설립 등에 따른 부동산 등기의 범위

대도시내 법인 설립등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는 법인 설립 및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가 해당된다 하겠으나 부동산의 취득이 법인 설립등과 관련성이 전혀 일정하지 아니한다면 법인 설립등에 따른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

대법원 관례(2001.4.10, 99두 1618, 1997.10.14. 97누 9253, 1995.4.28. 94누 11804)에서도 일관되게 대도시내 법인 설립등에 따른 부동산 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뜻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반드시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업무에 사용되는 것이어야 한다거나 취득 당시 전부를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설립·설치·전입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취득한 부동산을 그 후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의 등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이 법인 설립·설치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 관계를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납세자와 과세권자간에 중과세 대상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는데 취득한 부동산의 지점설치 등과의 관련성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입증에 노력한다면 다툼의 소지는 그 만큼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법인 목적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체육시설을 임대할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임차인을 구할 수 없어 체육시설의 유지를 위하여 다른 데에 임대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체육시설업을 하기로 하고 지점설치를 한 것이라면 부동산의 취득과 지점 사이의 관련성은 인정될 수 없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법인 설립·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

(1) 중과세 대상물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이내에 취득한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는 중과세 대상에 된다(지방세

법시행령 제102조제2항).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앞에서 설명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따라서 대도시내에서 법인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은 모두 중과세 대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대도시내에서 법인 설립후 5년이 경과한 법인과 설치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지점이 있을 경우 취득 등기한 부동산이 지점과 관련(지점용)되는 것이라면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하겠으나, 그 취득 등기한 부동산이 지점과는 관련이 없고, 본점용으로만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

(2) 법인설립후 5년의 기간계산

대도시내에서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는 중과세 대상이 되는데 여기서 다툼이 되는 것은 법인 설립·전입 이후 5년의 기간계산을 함에 있어 부동산의 취득시점으로 할 것인가 등기시점으로 할 것인가 이다.

즉, 대도시내 법인이 법인 설립·설치후 5년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소유권 등기는 5년이 경과한 후에 하는 경우 취득

시점으로 보면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만 등기시점으로 보면 법인설립후 5년이 경과 하였으므로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 하기 때문이다.

지방세법상 법인설립후 5년이내에 취득 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취지가 법인 등이 대도시내 지점 등을 설치한 이후 5년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규제하여 대도시내로의 인구 집중억제와 대도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 모함에 있으므로 그 규제의 중점은 부동산 의 취득에 있고 등기절차에 있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입법취지상으로는 법인설립 · 전입 이후 5년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 였다면 그 “등기”를 5년이후에 하였다라도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2001.5.29. 98두 9827, 1985.6.25. 85누 124)에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 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라 함은 “부동산 등기”가 법인 또는 지점 등 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이내에 이루어진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반복하여 판시하고 있어 앞으로 위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다.

V. 법인합병 및 분할로 인한 등기에 대한 중과세

대도시내에서 법인이 합병하거나 분할로 새로운 법인 설립시 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등기에 대한 중과세에 대하여는 다툼이 가끔 있기는 하나 관련 조문해석 및 판례가 확립된 상태라고 볼 수 있으나 법인분할로 법인설립시 중과세에 관한 다툼은 상법상 법인분할(분할합병)제도가 98년도 말에 도입되어 기간이 일천한 탓으로 중과세에 관한 쟁송 자체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1. 법인합병에 따른 등기

합병에는 당사법인이 해산하고 신법인을 설립하여 신법인이 해산한 법인의 재산과 사원을 수용하는 신설합병과 일당사법인만이 존속하고 다른 법인은 해산하여 존속법인이 해산법인의 재산과 사원을 수용하는 흡수합병이 있다(상법 제174조).

법인이 흡수합병을 하였을 경우에는 존속법인을 기준으로 중과세 해당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 (1) 영업양수인이 지점 사무실을 양수받아 사용하는 경우 중과 해당여부

영업양수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영업

양수를 하면서 당해 법인으로부터 그 영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무실을 설치한 것이 아니므로 대도시내 집중을 억제코자 하는 중과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취득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는 중과세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판례(1993.5.25. 92누 1742)에서도 갑 회사가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을 회사로부터 항업부문 영업 및 관련자산 일체를 양수하게 됨으로써 항업부문 영업을 위한 설치된 지점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지점 사무실을 분사무소 형태로 유지시킨 것이라면 종전에 없던 새로운 사무실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종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지점 사무실을 소속만 갑 회사의 지점으로 바꾸어 유지 존속시킨 것에 불과하고, 이는 대도시의 인구집중 억제제를 위하여 마련된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규정취지에도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위 법조 제1항제3호가 정하는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 등기”로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2) 흡수합병하여 지점을 설치한 후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중과 해당 여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지점을 설치한 후 그 법인의 영업용 재산이 아니라 위 흡수합병과는 전혀 무관하게 다른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경우는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대법원 2001.1.16. 99두 9995 및

1999.3.26. 98두 1673).

즉, 대도시내 갑 법인이 대도시내 을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을 법인의 본점을 갑 법인의 지점으로 등기하고, 법인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위 지점 설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 흡수합병과는 무관하게 대도시내 부동산을 취득·등록하였다면 이는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된다.

(3) 흡수합병으로 지점설치후 5년 이내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중과 해당 여부

흡수합병으로 지점설치후 5년 이내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에는 증축은 새로운 도시집중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하겠으므로 대도시 중과의 입법취지상으로 보나 중과세 규정의 문언상으로 보아 증축한 부분은 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봄이 합당할 것이다

행정자치부 심사청구결정(1999.5.26. 행자심 제99-366호)에서도 대도시내 법인이 흡수합병으로 소멸법인의 지점을 취득하여 새로이 존속법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지점으로 사용하다가 위 지점 설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 건축물을 증축 등기한 경우에는 위 증축건축물은 대도시내 위 지점설치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으며, 대법원판례에서도 이와 다르게 본바는 없다.

2. 법인분할로 인한 등기

법인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중의 법인과 합병(분할합병)할 수 있다(상법 제530조의2).

법인분할은 인적분할과 물적분할로 구분되는데 인적분할이란 분할부분에 해당하는 신주를 분할전 법인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형태의 법인분할이고, 물적분할이란 분할부분에 해당하는 신주를 분할전의 법인의 주주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분할전 법인이 취득하는 형태의 법인분할이라고 할 수 있다(상법 제530조의12).

위의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및 그에 관한 등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제1항제10호 및 제120조제1항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어 중과세가 문제되지 아니한다.

또한 IMF 경제체제 이후 투명한 기업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2001.12.31.까지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에 관한 협약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에 의하여 법인을 분할하여 신설하는 법인과 2001.12.31.까지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자력갱생 또는 청산절차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분할등기하여 신설하는 법인설립 등기에 대하여도 등록세를 면제토록 조세특례제한법(제199조제1항제18호)에서 규정하고 있어 위와 같은 경우에는 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2001년 3월 이전에는 대도시내 법인 분할로 법인설립 등기시 등록세 감면규정이 없어 등록세가 중과세되어 법인의 구조조정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1.3.28.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법인분할로 인한 법인설립 등기시에는 등록세를 중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즉, 법인설립등기일 현재 5년이상 대도시내에서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이 분할(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1)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로 인하여 대도시내 법인설립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일반과세(자본금의 0.4%)만 하고, 중과세(자본금의 1.2%)대상에서는 제외토록 하였다.

VI.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대상

1. 중과세 제외대상 개설

대도시내에서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

- 1)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사업부분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되는 다음의 업종에 대하여는 법인설립 및 부동산등기시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단서).

그러나 이들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와 2년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3배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1구의 건물의 전용면적이 60㎡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등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1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 등기는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시·도세감면조례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내지 15년의 범위내에서 취득세, 등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감면기간, 감면율 등은 해당 자치단체 감면조례를 보아야 한다.

종전에는 법인이 중과제외업종과 중과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등록세 과세표준구분

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전부를 중과세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나 2000년말 지방세법시행령(제102조제7항 신설)을 개정하여 이 경우 당해법인에 대한 등록세는 직전사업연도(중과제외 업종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당해법인의 총 매출액에서 중과제외업종과 중과대상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인분하여 과세하되,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형 고정자산의 비율에 의하여 과세토록 하였다.

2. 중과세 제외업종(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 및 제2항)

다음의 업종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도시내에 설치하더라도 관련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하지 아니한다.

①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동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업에 한하되, 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

행정자치부 심사결정(2001.2.27, 행심 제 2001-94호)에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인설립을 한후 자본금증자등기를 할당시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지 못하고 증자등기 이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법인을 설립하여 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된다면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 그 부동산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직접 영위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되어 중과세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1.4.24, 2000두 7803).

②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③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받은 해외건설업(당해년도에 해외건설실적이 있는 경우의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에 한한다)

④ 주택건설사업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위의 주택건설용 부동산에는 주택외에 주택건설관련법규에서 주택단지에 필수적인 시설로 규정한 복리시설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 밖의 복리시설 등은 관계당국의 사업승인을 받아 설치한 것이라 하더라도 여기서의 주택건설용 부동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어 중과대상에 해당된다(대법원 1997.11.11, 97누 7899).

⑤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

1999년 1월 1일 부터는 위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는 부동산도 중과

세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다.

⑥ 첨단 기술산업과 첨단 업종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 산업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첨단업종

그러나 첨단기술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매각한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행정자치부 2001.4.30, 행심 제 2001-229호).

⑦ 유통산업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 농수산물 유통가격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 물류센터, 유통자회사 및 축산업법에 의한 가축시장, 이 경우 유통산업발전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하는 부분도 당해업종에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유통산업 해당여부에 관하여는 쟁송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산업용품 상가에 입주하여 철물공구 및 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종이라면 대도시내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에 해당된다(감사원 2000.7.19, 감심 제200-249호).

⑧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이상을 직접 출자한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 ⑩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업
- ⑪ 개인이 영위하던 제조업의 법인전환
 개인이 영위하던 제조업(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말한다). 다만, 대도시안에서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개인기업이 당해 대도시안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기업에 한하여 중과를 제외하되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 가액이 법인전환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부분과 법인으로 전환한 날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중과를 하게 된다.
- ⑫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원 재활용업종
- ⑬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및 동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소프트웨어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 ⑭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초고속망사업
- ⑮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 ⑯ 종합유선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프로그램공급업 및 전송망사업
- ⑰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시설운영사업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은 시·도세 감면조례에 의하여 등록세가 면

제되므로 중과세가 성립되지 아니하나,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하여 추정하게 된다.

- ⑱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협동화사업으로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영위하는 사업
- ⑲ 해운산업육성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운산업합리화 계획에 참여하는 해운업
- ⑳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지원을 위하여 영위하는 사업, 다만, 법인설립후 1월 이내에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 ㉑ 석탄산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석탄산업합리화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 ㉒ 소비자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 ㉓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건설공제조합 및 업종별공제조합이 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 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엔지니어링공제조

- 합이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 ㉕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공제조합이 주택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 ㉖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할부금융업
 - ㉗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실내경기장운영업, 운동장운영업 및 야구장운영업
 - ㉘ 유선방송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선방송사업
 - ㉙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영위하는 사업. 다만, 법인설립 후 1년 이내에 동법에 의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만 한한다.
 - ㉚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문화예술단체, 체육진흥단체, 청소년단체가 그 설립목적에 의하여 수행하는 사업
 - ㉛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 ㉜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자 및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

하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는 중과하지 아니한다(지방세법 제280조제3항).

VII 중과대상 등록세 신고납부 방법 및 구제 절차

1. 신고납부 방법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등기당시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당해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신청서를 등기소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제150조의 2) 대도시내 법인의 과세물건이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다음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을 경과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게 되면 미납세액 또는 부족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즉, 중과세에 대한 가산세는 일반과세의 20%가 아니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미납부세액 또는 부족납부세액)에 대하여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중과대상이 될 경우에는 신고납부 기간산정에 유념하여야 한다. 위에서 중과세대상의 신고납부 기간(30일)기산일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① 대도시 안에서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와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을 대도시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설치된 날이 된다.

② 대도시 안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설비를 설치한 날이되며, 그 이전에 영업허가, 인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허가 인가등을 받은 날이 된다.

③ 중과제의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1년 또는 3년)이내에 당해업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이 되므로, 위의 날(기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며 산출한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된다.

2. 납세가 권리구제 절차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법인이 등록세 중과대상이 된 때에는 중과사유 발생일(기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중과세액(미납액)에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가산세의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과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중과 제외대상 해당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우선 신고납부를 한후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이하 “행정심판”이라 한다.) 절차를 거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다.

2001년6월 헌법재판소에서 지방세부과처분등에 대한 행정소송시 행정심판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은 행정심판이 헌법에서 규정한 사법절차를 준용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2001. 6. 28,2000헌바30)하고 있어 2001년6월28일 부터는 위 규정의 효력이 상실 되었으므로, 행정심판 제도가 사법절차를 준용하는 제도로 개선될 때까지, 납세의무자는 지방세 부과처분(신고납부포함)에 대하여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든지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든지 간에 선택권을 가지게 되었으나, 근년 행정심판에서 납세자의 주장에 대한 인용율이 높아져 2000년도 이의신청결정시 인용(취소 및 경정)율은 15%이고, 심사청구결정시 인용율은 31.6%나 되어 행정심판이 납세의무자의 비용절감 및 신속(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결정·통지) 간편한 구제기능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납세의무자의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시 행정소송에 앞서 행정심판을 종전과 같이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별 첨>

대도시지역내 법인등기 등에 대한 심사결정례

[1] 영업일체를 양수받은 경우 대도시내 등록세 증가 해당 여부(2001.5.28. 행심 제2001-282호)

甲 회사가 영업양수도 계약에 따라 乙 회사로부터 자산부채 등을 양수하여 乙 회사가 지점으로 사용하던 부분을 甲 회사의 지점으로 등기한 것은 종전에 없던 새로운 지점을 설치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대도시의 인구집중 억제에 위하여 대도시내 본점 및 지점 설치에 대하여 등록세를 증가세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지점 설치 이후의 부동산 등기”로서 등록세 증가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취소).

【處分要旨】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 9. 11. 인천광역시 ○○구 ○○동에서 지점설치 등기한 후 그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지점이 설치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전체 부동산이 등록세 증가세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그 중 지점이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만 증가세율을 적용한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나머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 2,354,509,320원, 교육세 431,660,040원, 합계 2,786,169,320원(가산세 포함)을 2001. 3. 10. 부과고지 하였다.

【請求趣旨】 청구인은 첫째, 양도인이 본점과 지점으로 사용하던 이 사건 부동산중 지점으로 사용하던 부분을 청구인의 지점으로 유지존속한 것은 새로운 지점의 설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등록세 증가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등록세를 증가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둘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 정리를 위하여 인수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등록세를 증가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決定要旨】 청구인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청구의 ○○법인의 영업과 관련된 자산·부채 등을 양수하면서, 청구의 ○○법인이 본점 및 지점으로 사용하던 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청구의 ○○법인이 지점(영업부)으로 사용하던 부분에 청구인이 지점설치 등기를 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중 일부는 본점의 전산부서 및 영업본부가 이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청구의 ○○법인의 자산, 부채 등을 양수하면서 본점내의 지점으로 사용하던 부분을 인수하여 지점 등기를 한 것으로서 종전에 없던 새로운 지점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한 청구 외 ○○법인의 본점 내 지점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청구인의 지점으로 유지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대도시내 본점 및 지점설치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

과세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 등기”로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지점등기를 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5년 내에 취득하였다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으므로 취소로 결정한다.

[2] 2개의 영업소 이전 목적으로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시 등록세 중과면적 산출 (2001.5.28. 행심 제2001-283호)

지점 설치 후 5년이 경과된 지점과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지점의 이전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 설치일을 기준으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취득한 부동산의 사용현황에 따라 안분할 수밖에 없다(경정).

【處分要旨】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 4. 1.경기도 부천시 ○○동에 지점을 설치하고, 1998. 2. 4. 추가로 경기도 부천시○○동에 지점을 설치한 후 이로부터 5년 이내인 1999. 11.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부동산을 지점 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등록세 159,055,110원, 교육세 29,160,080원, 합계 188,215,190원(가산세 포함)을 2001. 2. 16. 부과고지 하였다.

【請求趣旨】 청구인은 1991년도에 경기도 부천시에서 ○○ 영업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사무실이 협소하여 1998년도 인근에 추가로 □□직판영업소를 설치하여 업무를 분할하여 사용하다가 지점이전을 목적으로 1999. 1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위 2개의 영업소를 모두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전하고 사업등록증 중 1개는 반납한 것으로서, ○○ 영업소 설치일을 기준으로 보면 5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決定要旨】 청구인은 ○○영업소를 설치한 후 5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직판영업소 설치일로부터는 5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는 바, □□직판영업소의 경우에는 지점 설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직판영업소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도시내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에 해당됨이 명백하다 하겠으나, 지점 설치 후 5년이 경과된 지점과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지점이 지점 이전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지방세법상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 설치일을 기준으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취득한 부동산의 사용현황에 따라 안분할 수밖에 없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대도시 내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다 하겠으므로 지점 설치 후 5년이

경과된 ○○영업소가 사용하는 면적에 대한 등록세와 교육세를 감액한 세액으로 결정한다.

[3] 첨단기술산업용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등록세 중과세 해당 여부 (2001.4.30. 행심 제 2001-229호)

대도시내 법인의 부동산 등기시 등록세 중과세 제외 업종인 첨단기술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매각하였다면 대도시내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기각).

【處分要旨】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 9.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재 토지 및 건축물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첨단기술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증여 취득한 후 2000. 10. 26. 매각하였으므로 대도시내 법인의 부동산 등기로 보아 이건 부동산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 115,108,410원(가산세 포함)을 2001. 2. 10. 부과지 하였다.

【請求趣旨】 청구인은 계열기업 구조개선 작업과 관련된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한 것이므로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용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등록세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기업합리화 또는 구조조정 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대도시내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입법취지가 수도권 내의 법인설립을 억제하고 과도한 인구집중을 방지하며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을 도모하는데 있으므로 청구인이 인구집중을 유발하지 않고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였으므로 대도시내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決定要旨】 대도시내 법인의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예외를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서 금융기관 부채상환용 토지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토지로 규정하지 않고있을 뿐만 아니라, 동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1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매각한 경우에도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이라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의 경우처럼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첨단기술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별다른 정당한 사유없이 경영합리화 또는 기업구조조정을 이유로 매각하였다는 것은 내부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것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첨단기술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매각한 것이 분명한 이상, 처분청의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으므로 기각으로 결정한다.

[4]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사전지정이 중과 제외대상의 필수요건인지 여부 (2001.2.27. 행정심판 제2001-94호)

등록세 중과 제외업종인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인설립을 한 후 자본금 증자등기를 할 당시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지 못하고 증자등기 이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법인을 설립하여 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된다면,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을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취소).

【處分要旨】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 5. 16. 서울특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같은 해 9. 22. 자본금 증자등기를 하면서 일반세율로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증자 당시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증자금액에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 11,36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0. 12. 12. 부과고지하였다.

【請求趣旨】 청구인은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00. 12. 14.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법인으로서 등록세 중과제외 업종인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는데도 증자등기 당시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決定要旨】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록세 중과제외 업종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등록세 중과제외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이어야만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경우 청구의 ○○건설이 민간투자유치시설사업으로 고시된 서울외곽순환도로사업과 관련하여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협상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별도로 청구인을 설립하여 이러한 사업을 추진토록 함으로써 법인설립 및 증자등기 이후인 2000. 12. 14. 예서야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게 된 것으로서, 청구인은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고 있고, 이렇게 법인을 설립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본금 증자 당시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지 않은 상태라는 사유만으로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입법취지에서 볼 때에도 불합리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본금 증자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으므로 취소로 결정한다.

[5] 임대사업 사무소가 대도시내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지점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1.4.30. 행심 제2001-228호)

독립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아니더라도 부동산 임대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하고 있는 장소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는 이상, 사무소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점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기각).

【處分要旨】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 9. 17. 및 11. 11. 2회에 걸쳐 경기도 성남시 소재 토지 및 건축물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등기한 후 그 건물 9층에 사무소(이하 “이건 사무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등기를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그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 781,986,570원(가산세 포함)을 2000. 2. 10. 부과지 하였다.

【請求趣旨】 청구인은 무선조정기를 생산·판매하는 벤처기업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본점을 두고 경기도 부천시 소재의 전자제품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미국 및 유럽 시장에 전량 수출하고 있으며, 이건 부동산은 신용장 개설을 위한 담보 목적으로 취득한 후 임대용에 공하고 있으며, 납세업무상 1999. 9. 17.에 사업자등록(부동산 임대업)을 하였고 이건 부동산의 9층에 신용상태 확인을 위해 방문하는 외국 바이어들의 안내와 본사 직원 (최 □ □) 이 임대료 수금시 사용하는 사무소가 있으나, 여기서는 직원이 상주근무하지 않고 독립된 회계업무나 의사결정 등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가 아니므로 지점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건 사무소를 지점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決定要旨】 이건 사무소에는 사장실과 사무실이 있는 구조로 되어있고 그 내부에는 책상 3개, 컴퓨터, 캐비닛, TV, 에어컨, 전화기, 응접탁자 등 사무소로서의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청구인의 감사 김○○가 이건 사무소의 사장 명함을 가지고 대외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본점의 사원 최□□은 이건 사무소에 상주하면서 임대료 수금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건물관리를 위해 본점의 관리부소속 직원2명이 기관실에 근무하고, 기타 경비 및 주차관리 등은 용역회사에 위임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이 1999. 10월부터 이건 사무소에 근무하는 종업원 수를 3명으로 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를 처분청에 매월 납부해온 사실 등을 종합해보면, 비록 독립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아니더라도 부동산 임대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하고 있는 장소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는 이상, 이건 사무소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점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기각을 결정한다.

[6] 대도시내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지점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0.3.29. 행심 제2000-215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 중과 대상인 “지점”은 각 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실 및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한 장소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취소).

【處分要旨】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 7. 27. 신축 취득한 서울특별시 중구소재 업무시설 3,972㎡(이하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에 1999. 6. 17. ○○ 공구 ○○지점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자등록(사업개시일 1999. 8. 1)을 하고 그 3층에 사무실 (이하 “이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직원 1명을 상주토록 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대도시내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쟁점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113,010,880원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請求趣旨】 청구인은 신고 납부한 이건 등록세 등에 대한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쟁점 건축물에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물적시설을 갖추거나 인원을 상주시킨 사실이 없으며, 쟁점 건축물에 대한 가격의 결정, 임대차계약의 체결, 세금계산서의 발행 등의 임대사업 관련 업무는 모두 본점에서 수행하고 지점으로서 독립적인 회계처리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 지점이 설치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決定要旨】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2 각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지점”은 각 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실 및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한 장소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여기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 지는 장소”라 함은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시설을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쟁점 부동산의 임대가격의 결정, 임대계약의 체결 등 임대관련업무를 본사에서 직접 수행하였고, 임대료 및 관리비도 임차인들이 본사의 통장에 개별적으로 송금하고 있으며 2000. 1. 1. 자로 문제가 된 이건 사무실 또한 ○○ 트랙에게 임대되었고 청구인의 본점이 이건 건축물로부터 약 150m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지점으로서의 대외적인 임대관련업무 등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취소로 결정한다.

[7] 대도시내 중과제외업종 겸업법인의 등록세 중과대상 면적 산출 방법 (2000.3.29. 행심 제 2000-217호)

대도시내에서 지점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함에 있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부를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도시형 업종인 자원재활용으로 사용할 경우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면적 산출은 공장등록증에 등록되어 있는 면적이 아니라 사실상 중과세 제외대상 업종에 사용하는 면적으로 함이 마땅하다(경정).

【處分要旨】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 3. 19. 인천광역시 남동구 ○○ 동에서 지점을 설치하고 동일 번지의 토지 및 건축물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1996. 7. 5. 취득 등기한 후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공장용으로 일부(168㎡)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이하 “이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등록세가 중과세되는 대도시내에서 지점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 80,287,730원(가산세 포함)을 1999. 12. 10. 부과고지 하였다.

【請求趣旨】 청구인은 대도시내에서의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인 자원재활용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생산공장, 원자재 보관창고, 당직실, 사무실, 임원실 및 기술개발실, 사택으로 사용하는 면적 등 모두 441.449㎡이며, IMF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건물 유지관리차원에서 교회와 점포 5개소 등 실제 임대한 면적은 585.19㎡임에도 처분청은 단순히 공장등록증에 등재된 공장면적 168㎡만을 제외한 나머지 1,026.639㎡를 모두 중과대상으로 보아 이건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決定要旨】 청구인의 경우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도시형업종인 자원재활용의 면적이 공장등록증에는 168㎡로 등재되어 있으나, 2000. 3. 9.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현장을 재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장등록증에 등록되어 있는 면적 외에 지하 1층에는 원자재 창고 93.21㎡와 당직실 41.73㎡가 있고, 지상 1층에는 임원실 및 사장실 44.82㎡와 기술개발실 44.40㎡가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건 쟁점 부동산 중 중과세 제외대상 업종의 공장 부대시설로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건물 224.16㎡와 그 부속토지는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함이 마땅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공장등록증에 등재된 면적만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경정으로 결정한다.

[8] 대도시내 중과업종과 중과제외업종 겸업법인이 증자등기시 중과세액 산출 (2001.2.27. 행심 제2001-95호)

등록세 중과업종과 중과제외업종을 겸업하고있는 법인이 법인설립 후 5년 이

내에 자본금 증자등기를 하였다면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과제외업종과 중과업종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자본금 증자등기에 대한 등록세 등을 중과제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기각).

【處分要旨】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 8. 7. 대도시내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본점을 설립하여 자동차 부품생산업을 영위하다가 5년 내인 2000. 6. 10. 같은동 ○○번지로 본점을 이전하면서 자본금 증자등기한 후 일반세율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중과제외업종과 중과업종을 겸업하고 있으므로 자본금 증자액을 청구인의 1999년도 매출액 중 중과업종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금액에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등을 2000. 8. 10. 부과고지하였다.

【請求趣旨】 청구인은 자동차발전기부품인 전기부분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공장의 생산업종도 중과제외업종인 충전기, 콘버터, 변압기 등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산업과 첨단업종을 영위하고 있는데도, 중과업종을 겸업하는 것으로 보아 이견 등록세를 중과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決定要旨】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중 지게차, 골프카 등 전기자동차 부품 중 자동 반자동 무단변속기 등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표 5」에서 첨단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발전기 및 전력변환장치 제조업”에 해당되지만, 첨단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변압기 부품제조업 등 일부업종을 겸업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과제외업종과 중과업종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자본금 증자등기 대한 등록세 등을 중과제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하겠으므로 기각으로 결정한다.

[9] 대도시내 중과업종과 중과제외업종 겸업법인이 증자등기시 중과세액 산출 (2000.2.23. 행심 제2001-70호)

법인 등기부상 목적 사업에 등록세 중과업종과 중과제외업종이 함께 등재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금 증자등기를 한 경우, 당해 법인의 직전사업연도의 사업내용을 판단하여 실질적으로 중과제외해당업종에 해당하는 부분은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취소).

【處分要旨】 처분청은 1995. 2. 14. 대도시내에서 설립된 청구인이 그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인 1998. 12. 3. 자본금 증자등기를 하였는데도 중과세율에 의한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증자금액에 구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 681,60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9. 11. 9. 부과고지하였다.

【請求趣旨】 청구인은 1995. 2. 14.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6. 1. 9. 재정경제부로부터 할부금융업 영업인가를 받아 할부금융업을 전업으로 영위해오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 사업에 할부금융업 외의 타업무가 등재되었다는 이유로 실제로 영위하지도 아니한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중과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決定要旨】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등록세 중과업종과 중과제외업종이 함께 등재되어있는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금 증자등기를 한 경우, 처분청은 등록세 중과제외업종과 중과업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는 부동산 등기와는 달리 지방세법시행령에 업종별로 별도의 안분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설립 및 자본금 증자등기에 대하여는 업무비율에 관계없이 전체업종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증자등기일 현재 청구인의 사업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당해 법인의 직전사업연도의 사업내용을 판단하여 실질적으로 중과제외 대상업종에 해당하는 부분은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영업수익의 내역을 보면, 영업의 수익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자, 배당수익, 유가증권평가이익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수익 모두가 할부금융업에서 발생한 수익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건의 경우는 등기부상업종과 관계없이 모두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최소로 결정한다.

[10] 대도시내에서 증설한 발전소가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1.4.30. 행심 제 2001-226호)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3의 28에서 전기업을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였으나, 이는 1996. 12. 31. 구 내무부령 제701호로 개정되면서 포함된 것으로서 그 이전(1996. 12. 31)에 증설된 발전소는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 제외대상공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가각).

【處分要旨】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 4. 27. 경기도 고양시 소재 토지를 취득한 후 1993. 12. 31. ○○발전소를 신설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1995. 8. 25. 과 1996. 7. 15. 냉각탑 및 건축물 등을 증설하였으므로 증설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이하 “이건 발전소”라 한다)를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증설한 사업용 과세물건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2000. 9. 18. 중과세 고지하였다.

【請求趣旨】청구인은 첫째, 1996. 12. 31. 자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의 「별표3」 28에서 전기업과 지역난방업은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된 취지나 합목적성에 비추어 이건 발전소는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둘째,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3항 단서에서 취득일로부터 공장신설 또는 증설에 착수한 날

까지의 기간이 5년을 경과한 사업용 과세물건은 증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발전소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증설에 착수한 날인 1994. 6. 24.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되어 증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決定要旨】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이건 발전소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전기업으로서, 그 발전 과정에서 생산되는 난방열을 청구의 한국지역난방공사(별도의 법인으로서 연접지역에 위치해 있음)에 공급해 주고 있을 뿐, 지역 난방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것이 아님을 제출된 사업자등록증에서 알 수 있으며,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취득세 증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장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형업종의 공장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업 공장에 해당되어야 하지만, 제조업과 전기업은 별도의 분류항목에 속해 있으므로 이건 발전소는 도시형 업종의 공장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구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 3의 28에서 전기업을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는 1996. 12. 31. 구내무부령 제701호로 개정되면서 포함된 것으로서, 그 이전에 증설된 이건 발전소는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둘째, 이건 발전소 증설에 착수한 날(1994. 6. 24)부터 기산하면 5년이 경과되어 부속토지는 증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12조의 2 제3항 단서에서 취득일로부터 공장신설 또는 증설에 착수한 날까지의 기간이 5년을 경과한 사업용 과세물건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여 공장의 신축 또는 증설에 착수한 날까지의 기간이 5년이 경과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토지를 취득한 날(1993. 4. 27)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1994. 6. 24. 증설에 착수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발전소를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증설한 사업용 과세물건의 취득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증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으므로 기각으로 결정한다.

[11] 본점과 서울사무소를 함께 사용하는 건물의 취득세 증과대상 면적 (2000.11.28. 행심 제 2000-791호)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건물을 신축한 후 본점과 서울사무소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증과대상면적 산출 시 당해 법인 기구표에서 기획본부, 홍보실 등이 지점업무로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업무가 본점에 설치되어 있는 인력본부 등과 중복되거나 명백히 구분되지도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본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면, 본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증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경정).

【處分要旨】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 7. 14.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건축물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그중 13.732㎡를 1995. 10. 16.부터 임원실 등 본점 사업용으로 사용하는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율로 신고 납부하였으나, 1999. 9월 서울특별시가 세무 조사한 결과 본점사업용으로 신고한 면적 이외에 45.610㎡를 자금관리실 등 본점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취득가액에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7,355,952,190원(가산세 포함) 부과고지 하였다.

【請求趣旨】 청구인은 첫째, 처분청이 본점의 사무소용으로 본 자금관리실, 원료 1.2실, 홍보실, 외자구매실, 정보시스템실, 판매관리실, 수출 1.2실, 냉연판매실, 열연판매실 중 「판매관리실, 수출 1.2실, 냉연판매실, 열연판매실」은 제품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영업지점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이를 본점 사무실로 본 것은 부당하고,

둘째, 공용면적을 안분계산하면서 건축물의 각 층별로 해당층만을 위한 유니트 방식으로 설계, 설치된 공기조화시설 면적을 각 층별로 구분계산하지 아니하고, 이를 건물 전체공용면적으로 보아 전체면적 중 본점 사무소용 면적비율로 안분하고 그에 따라 중과세 면적을 산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決定要旨】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의 기구표에서 서울지점에는 기획본부, 홍보실, 재무본부, 원료구매본부, 마케팅, 해외사업본부, 행정팀, 사옥운영팀, 감사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업무가 본부에 설치되어 있는 인력본부, 재무본부, 구매본부, 기술본부, 총무본부, 감사실 등과 중복되거나 명백히 구분되지 아니하며, 서울사무소 소재로 되어 있는 이건 건축물의 27층~29층까지 3개층이 임원실을, 다른 2개층에 기획조정실을 두는 등 실질적으로 본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지점사무소용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 하겠다.

둘째, 이건 건축물의 공용면적에 해당하는 공기조화시설 면적의 안분계산에 대하여 보면, 2000. 7. 29. 청구의 ○○설계가 제출한 이건 건축물의 공기조화시설 설비에 대한 의견서에서 이건 건축물의 각 층에 설치되어 있는 공기조화시설은 승강설비 등과 같이 건물 내 공동설비가 아니라 해당층 및 해당층내 각 계층별(구역별)로 독립된 전용시설로 설비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공기조화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은 각 층별면적을 포함하여 중과세 대상면적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하겠으므로 중과대상 면적을 건물전체의 고용면적으로 보아 안분계산한 43.907㎡는 각층별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42.263㎡로 경정하여야될 것이므로 이건 취득세 등 중과세 처분은 7,074,564,820원으로 경정결정한다.